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2기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026.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 [별정직 22명 (고위나 1명, 4급상당 3명, 5급상당 9명, 6급상당 9명), 일반직 6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하고, 일반직 6명 증원에 따른 과건부처 인원을 **교육부 2명**(행정사무관, 행정주사보) 증원, **행정안전부 1명**(기록연구관) 증원,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보) 증원, **보건복지부 1명**(행정사무관) 증원, **성평등가족부 1명**(행정주사) 증원으로 각각 충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증원된 정원을 통하여 조사 3국 설치 등 법률 개정의 목적에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합의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165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9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1
4급상당	10
5급상당	28
6급상당	47
7급상당	11
일반직 계	5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정보사무관·사회복 지사무관·보건사무관·기록연구관 또는 수사사무관	18
검찰주사·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 설주사·전산주사·정보주사·수사주사·편사연구사 또는 기록연구 사	21
검찰주사보·행정주사보·수사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9
특정직 계	7
경정	2
경감	1
경위	3
경사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헌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u>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u> ,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u>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u> ,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② ----- ----- <u>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u> ,----- ----- ----- ----- ----- ----- ----- ----- ---- <u>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u> ,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u>2명</u>

<u>1명(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u>	<u>(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연 락 처	(02) 3393 - 9749